

#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박문수 의원)

의안 번호	42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16. 6. 10.

공동발의자: 구본승, 김영준, 이백균  
이정식, 장동우, 강선경

## 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」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·지출과 위원 인적사항 공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보완·개선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」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(안 제2조 외)
- 나.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서식과 자치회관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식을 조례로 규정 (별표 3, 별표 4 신설)
- 다. 선출된 구의원은 선출된 선거구에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규정 (안 제17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 없음

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2조제1호** 중 “프로그램을”을 “강좌를”로 한다.

**제6조**의 제목 “(시설 및 프로그램)”을 “(시설 및 강좌)”로 하고, 제6조제1항 중 “프로그램”을 “강좌”로, “을”을 “를”로 한다.

**제7조제1항** 중 “프로그램”을 “강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리더십”을 “지도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리더십”을 “지도력”으로, “워크숍, 선진사례 연수 등의 프로그램”을 “공동연수, 선진사례 연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강좌프로그램”을 “강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프로그램”을 “사업”으로 한다.

**제10조제2항** 중 “프로그램을”을 “강좌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반기별”을 “별표 3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”로 하며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**제17조제1항** 본문 중 “거주”를 “선출된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며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매년도”를 “별표 4의 서식에 따라 매년도”로 한다.

제29조제2호 중 “제20조제2호”를 “제20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과 별표 4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사용료 등 징수 범위(제10조제3항 관련)

1. 시설사용료

구 분	단 위	면 적	상한금액	비 고
사용료	1시간	50㎡미만	10,000원	·부대시설 포함 ·사용료는 최초 1시간 으로 하고 1시간 초 과 30분마다 25%를 가산한다.
		50㎡이상 ~ 100㎡미만	15,000원	
		100㎡이상 ~ 150㎡미만	20,000원	
		150㎡이상 ~ 200㎡미만	25,000원	
		200㎡이상	30,000원	

※ 징수기준 :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에서 규정한 기능 이외 사용할 경우

2. 수 강 료

구 분	수 강 료	수강기준	비 고
강좌 (문화여가·교육)	15,000원 이하	주1회 이하 총 4시간 이하 운영	실습재료비 및 교육 기자재사용료는 별도
	25,000원 이하	주2회 이상 총 5시간 이상 운영	

[별표 3]

강북구 ○○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

운영개요

- 기 간 : . . . ~ . . .
- 운영장소 :
- 운영강좌 : ○○교실 외 개 교실
- 강 사 : 명

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

- 총 괄

전년도이월액	수 입	지 출	집행잔액	비 고

- 수강료 수입내역

연번	강 좌 명	강사명	수입금액	산 출 내 역	비 고
				수강인원×수강료 =	

- 수강료 지출내역

연번	강 좌 명	지출금액	산 출 내 역	비 고
	강좌 강사료			
	강좌 시설 및 장비 구입비			
	자원봉사자 수당			
	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비			
	강좌 전시회 및 발표회 비용			
	기 타			

위와 같이 자치회관 강좌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.

서울특별시 강북구 ○○동 주민자치위원장(직인)

[별표 4]

강북구 ○○동 자치회관 위원 인적사항 공고

□ 현 황

- 위원회명 : 서울특별시 강북구 ○○동 주민자치위원회
- 위 원 장 :
- 위원구성 :       명 (남       명, 여       명)

□ 위원별 인적사항

연번	직 위	성 명	연령	성별	직업	주 소	위촉일자	임 기 만료일자	비고
	당연직고문								
	위촉직고문								
	위 원 장								
	부위원장								
	간 사								
	위 원								
	위 원								
	위 원								
	위 원								
	위 원								
	위 원								
	위 원								
	위 원								
	위 원								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○○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.

20 . .

서울특별시 강북구 ○○동장(직인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자치회관"이란 제1조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과 <u>프로그램</u>을 총칭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강좌</u>를 ----- 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<u>시설 및 프로그램</u>)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<u>프로그램</u>(이하 "시설 등"이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6조(<u>시설 및 강좌</u>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강좌</u>----- -----를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운영) ①자치회관의 시설 및 <u>프로그램</u> 운영(이하 "자치회관의 운영"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7조(운영) ①----- 및 <u>강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⑥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십 향상 및 자치회관의 운영 능력 향상,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자, 강사 및 관계 공무원 등 운영 관계자에 대한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샵, 선진사례 연수 등의 프로그램

2. (생략)

3.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좌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

4. 지역복지, 사회진흥, 주민자치기능의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

⑦·⑧ (생략)

제10조(사용료 등) ① (생략)

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,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

⑥-----  
지도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 지도력 -----  
- 공동연수, 선진사례 연수 등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강좌 -----

4. ----- 사업 -----  
-----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용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 
-----  
-----  
--- 강좌를 -----



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.

③ ~ ⑤ (생략)

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수입·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강북구 소식지,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·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⑦ (생략)

제17조(구성 등) ①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, 전년도 말 동 인구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위원을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둘 수 있으며,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. 단, 행정구역 조정 등의 사유로 구성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위원에 한정하여 임기 등 신분을 보장한다.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별  
표 3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---  
-----  
---누리집-----  
-----  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구성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선출된 선거구의  
당연직 고문이 되며 비례대표로  
선출된 구의원은 거주 --. 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⑤ (생략)

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 
모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 
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  
· 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 
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고  
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  
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 
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  
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9조(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  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
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  
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제20조제2호 부터 제3호에  
해당하는 경우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-----  
-----  
별표 4의 서식에 따라 매년도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9조(해촉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20조제1항제2호 -----  
-----